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호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29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2.

발 의 자:윤호중・이기헌・조 국

정성호 • 한민수 • 조계원

임광현 · 권칠승 · 김영환
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'공유숙박'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용이 높아지고 있음.

그런데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과 달리,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 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는 등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의2제7항 및 제53조의2제8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 10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7항"을 "제9항"으로 한다.

- ⑦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, 납세지 관할 지 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8 국세청장,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사항을 명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) 제53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

후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의2(전자적 용역을 공급하	제53조의2(전자적 용역을 공급하
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	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
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) ①	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) ①
~ ⑥ (생 략)	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	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
	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,
	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
	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
	제출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⑧ 국세청장, 납세지 관할 지방
	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
	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관련
	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
	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
	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
	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
	명할 수 있다.
<u>⑦</u> (생 략)	<u>⑨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
⑧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	<u> </u>
제7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	제9항
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적 용역	

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	
출하여야 한다.	
<u>⑨</u> · <u>⑩</u> (생 략)	<u>①</u> · <u>②</u> (현행 제9항 및 제10항
	과 같음)